

메릴랜드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

정. 부회장 및 이사 선출에 관한 선거시행세칙

2019.10.31

제 1 조 (명칭)

메릴랜드 한인회(이하 <한인회> 라 칭함) 회칙 제 11 장에 의거하여 메릴랜드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라 칭함) 라 칭하며 동 규정은 메릴랜드 한인회 정. 부회장 및 소정의 이사 선출에 관한 선거시행세칙(이하<선거세칙> 또는 <세칙> 이라 칭함) 이라 칭한다.

제 2 조 (제정 근거 및 목적)

한인회 회칙 제 41 조에 의하여 제정되며 동 회칙 제 15 조 2 항 및 제 11 장의 각 조항에 규정된 당해 정. 부회장의 민주적이며 공명정대하고 효과적인 선거를 시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본 선거세칙을 제정한다.

제 3 조 (구성, 임기 및 임무)

한인회 회칙 제 37 조에 의거하여 선관위는 4 명의 현직이사 및 3 명의 일반 정회원, 도합 7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임 구성되며, 그 임기는 구성된 날로부터 차기 선관위가 구성되는 전일(1 년+ -) 까지로 하며 구성된 선관위는 당해 선거 실시에 관한 필요할 모든 절차 및 방법을 총괄 관장한다.

제 4 조 (사무실)

본 선관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인회 관할 지역 내에 사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편의상 이를 생략,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장 선출 및 임무)

본 세칙 제 3 조에 구성된 7 인의 위원회에서 1 인의 위원장을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장은 동 선관위의 필요할 모든 회의 및 집행을 관장하는데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부재 시는 동 위원 중 최고령자 순으로 위원장 직을 대행한다.

제 6 조 (결원 및 보충)

선관위로 위촉된 자가 사임 시에는 동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임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의 사임 시는 당시의 이사회 의장(한인회장)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위의 사임에 의할 기타 유고에 의한 결원 시는 한인회 회칙 제 37 조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나 편의상 위원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단 사정에 의해 보충이 불가능할 시는 위원장이 결원된 소정원의 임무를 전권 대행한다.

제 7 조 (회의 및 의결)

1) 선관위는 임기 동안 당해 선거 실시에 관할 문제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위원장 또는 위원 4 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에 의해 의안을 가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회의 불참 시는 동위원장 또는 위원 중 1 인에게 그 권한을 위촉할 수 있다.

2) 가결된 모든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선관위의 모든 회의는 필히 당해 정.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 중 1 인의 참석이 요구되며 만약 불참 시는 제반 결정 사항을 당해 한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재정 및 경비 지출)

본 선관위의 임무 수행상 필요할 모든 재정의 염출 및 경비 지출은 등록 접수된 입후보자의 공탁금 및 기타 찬조금에 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한인회의 일반 재정에서 염출될 수 있으며 상기의 원칙에 관계없이 행위 발생 당시의 한인회장 책임 하에 우선 선대 지불 되어져야 한다.

제 9 조 (지출내역 및 청구)

선관위에서 임무 수행상 필요할 제반 경비(회의비, 공고 및 광고비, 사무용품 및 재료비, 시설 및 인건비 기타 부대 비용 등)의 청구는 위원자의 확인 서명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출된 경비는 그 결과를 당해 한인회장이 추후 동 선관위에 통보하는 의무를 진다.

제 10 조 (공고, 광고 및 부대 시설)

선관위의 결의에 따라 당해 선거 실시에 관계되는 대내의 공고문 및 광고문의 송달 의뢰, 선거 실시 장소 선정, 시설, 비품 구입 등 일체를 한인회장이 책임진다.

제 11 조 (선거권 자, 피선거권 자 및 입후보자 추천인)

- 1) 선거권 자: 한인회 회칙 제 4 조 1 항 및 제 5 조에 준하여 선관위의 결의에 의해 당해 한인회장이 작성 제출하여 선관위의 자격 심사를 필 할 별도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를 원칙으로 하나 당해 선관위의 결의에 따라 이에 관계없이 한인회의 존립 목적에 부응하여 회원의 참여 의식 고취를 감안, 회칙 제 4 조 1 항에 의할 시행 당시의 참석자로 할 수 있다.
- 2) 피선거권 자: 한인회 회칙 제 4 조 1 항, 제 5 조 및 제 12 조 각 항의 규정에 준한다.
- 3) 입후보자 추천인: 한인회 회칙 제 4 조 1 항 및 제 5 조의 규정에 의할 정회원으로서 당해 회계연도 회비를 납부할 자에 할하며 회비 납부자 명단을 한인회장이 작성 제출할 명부에 의거한다.
- 4) 제 1), 3) 항과 관련하여 한인회장은 당해 회계 연도 회비를 납부할 회원 명부, 이사회비를 납부할 이사 명부 및 각종 기부금 납부자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명부를 선거 관리 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제 12 조 (선거 일시 및 장소)

선거 실시 일시 및 장소는 한인회의 정기 총회 일시 및 장소를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당일의 기후 조건 및 총회 시간의 지연 단축에 따라 선관위의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 13 조 (입후보자 등록 방법 및 접수)

- 1) 회장단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당해 선관위의 결의에 따라 공고된 소정의 등록 방법에 의해 소정의 서류 및 선거 공탁금을 직접 선관위에 접수시켜야 한다. 당해 선관위의 결의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으며 회칙 제 39 조에 의해 정. 부회장은 동일조로 출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칙 제 11 조 3 항에 준할 회원 100 명 이상의 서명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 단, 회칙 제 40 조에 규정된 사항은 별도의 본 세칙 규정에 의한다.
- 2) 입후보자의 추천은 등록 당일까지 회비 납부 자에 할하며 이중 추천은 안 된다.

제 14 조 (등록 서류)

회장단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한인회 회칙 및 선거 세칙 및 당해 선관위의 결의에 따른 제반 서류 및 소정의 공탁금을 소정의 방법에 의해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의 심사를 거쳐 하자 없이 등록, 접수된 서류 및 공탁금은 이유 여하를 불문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출 서류는

- 1) 정. 부회장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별첨 양식)
- 2) 이력서(학력 증명서 첨부는 제외하나 이력서 내용이 허위가 있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 3) 상반신 명함판 사진
- 4) 추천인 명부(별첨 양식)
 - * 정회원 회비 납부자 100 명의 서명 추천서
 - 수취인: 메릴랜드 한인회(Korean Society of Maryland)
- 5) 선거공탁금 \$10,000.00 (Cashier's Check, Money Order or Certified Check)
- 6) 연방 정부 및 주정부 신원조회서 첨부
 - Federal Background Check
 - U.S. District Court
 - 101 W. Lexington St. Baltimore, MD 20201 (410) 962-2600
 - Maryland State Background Check
 - CJS-Central Repository
- 7) 연임하는 전직회장과 부회장도 새 회장으로 출마 시에는 선관위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8) 연방정부 신원 조회 미비 시 신원조회 결과 보고서를 당 해 12 월 31 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 15 조 (접수 및 통보)

- 1) 소정의 방법에 의해 선관위에 등록 접수된 서류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어떠한 자도 이를 개봉할 수 없다.
- 2) 등록된 서류의 송달 책임자는 지체 없이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위촉할 위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접수 서명 및 접수 일시를 서류에 명기해야 한다.
- 3) 입후보자로 소정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필 할 자는 위원장으로부터 등록 필 여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연락 받게 되며 선관위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확정된 자는 동시에 교포 언론 2 개 처 이상 또는 지정된 장소에 입후보자로 공고된다.

4) 등록 접수된 일련의 서류상 허위 기록(입후보자의 자격 요건, 등록 마감 일시, 공탁금, 사진, 추천인 명부, 등록신청서, 이력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신원 조회서) 이 있다고 판단될 시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 이의 처리 문제를 가결한다. 단,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이상의 허위 기록이 아닌 부문에 관할 정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는 동위원장은 지체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인에게 통보하여 접수된 시간으로부터 72 시간 내에 미비 된 사항을 정정 보완토록 1 차에 한하여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소정의 시간 내에 정당할 이유 없이 동 지시에 불응 시는 자동 실격자로 간주되며 접수된 서류 및 공탁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16 조 (선거공고)

선거 시행에 따르는 공고는 1) 입후보자 등록 실시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자 공고 3) 당선 공고 등을 필수로 하나 당시의 사정에 의해 부대 공고 (투표인 명부 열람 공고, 정정 공고, 해명 및 성명서 등) 을 추가로 할 수 있으며 모든 공고는 교포 언론 2 개 처 이상 또는 회원들의 내용이 빈번할 관할 지역내의 2 개 처 이상에 1 회 이상 공고 또는 부착해야 한다.

제 17 조 (입후보자 진행 순서)

회장단에 출마코자 입후보할 각 측 입후보자에 대한 기호 선정, 정견 발표, 호명 등 진행상 필요할 제반 절차의 순서는 1) 접수 순, 2) 성명의 가나다순, 3) 연장자 순에 의하여 추천한다.

제 18 조 (투표 방법)

모든 투표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단일 입후보의 경우 선관위의 결의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 식의 공개 방법을 채택하고 회칙 40 조에 의해 필히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획득하지 못할 시는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심의 의결 후 15 일 이내에 제반 사항을 최종 결정하여 공표한다.

제 19 조 (투표지)

투표지는 선거 실시 7 일전까지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된 기표 지의 이면에는 위원장 및 각 측 입후보자의 관인 확인 서명을 투표지 배부 직전에 필요로 하나 선관위의 결의에 의해 이를 삭제할 수도 있다.

제 20 조 (기표상의 유, 무효 판별)

기표 (0) 가 상대방 측의 경계선 상에 물렸을 경우 육안으로 보아서 상대방 칸 () 또는 선() 의 외부로 전혀 넘지 않았을 경우만 유효로 간주한다. <보기> 별첨

제 21 조 (선거 참관인)

등록을 필 한 입후보자는 3~5 인의 선거 참관인을 선정 선거 실시 7 일전까지 그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참관인으로 위촉된 자는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선거 실시 기간 중 질서 유지의 협조 및 투, 개표 과정의 참관을 함으로써 공명선거 유지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진다.

제 22 조 (입후보자 등록 부재)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정. 부회장 입후보자 등록 부재 현상이 발생할 시는 회칙 제 40 조에 의해 총회 장에서 직접 호선 하게 된다. 이의 경우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회원 10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서 정할 소정의 시간 내에 입후보자의 간략할 신상 명세서 및 추천인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본 세칙 제 14 조에 명시된 기타 서류는 당선이 확정된 시간으로부터 72 시간(공휴일 포함) 내에 선관위에 우편 또는 기타, 기타 직접, 간접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며 낙선 자는 이의 의무를 배제한다. 단, 총회 호선의 경우 회칙 제 40 조에 의해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획득하지 못할 시는 1 차에 할하여 재투표를 할 수 있으며 재투표에서는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할 시는 최다득점자 순에 의해 당락을 결정한다.

제 23 조 (총회 호선의 부재 현상)

전항의 등록 부재로 인한 호선의 경우 선관위에서 정할 소정의 시간 내에 입후보자 부재 현상이 재차 발생할 시는 행위 발생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선관위는 1 차에 한하여 입후보자 등록 실시 기간 연장 또는 재등록 실시 기간을 공고하여 임시 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하며 신임회장 선출 시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당해 정. 부회장이 한인회 임시 의장단으로 자동 위촉되며 위임 받은 임시 의장단은 한인회의 모든 행정 일체를 관장, 회장으로서 임무를 대행한다.

제 24 조 (등록 연장에 의한 입후보자 부재 현상)

전항의 1 차 등록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 등록 공백이 재 발생할 시는 등록 마감일과 동시에 전항의 임시 의장단은 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며 동시에 선관위원장을 한인회 임시 의장으로 하는 선관위원 전원이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며

한인회의 임의 의장단으로서 모든 행정 일체를 총괄 관장한다. 동시에 임시 총회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신임 회장단을 선출 한인회를 재 출범시키는 의무를 지며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단은 14 일 이내에 한인회의 모든 업무를 선관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25 조 (당, 락 결정)

모든 투표의 당, 락의 결정은 최다득점자 순에 의하며 동일 득점의 경우 1 차에 한하여 재투표를 할 수 있으며 재투표의 경우 동일 득점 시는 고령자 순에 의한다. 단, 단일 후보 및 등록자 부재로 일할 총회 호선의 경우는 회칙 제 40 조 및 선거 세칙 제 22 조에 준한다.

제 26 조 (투, 개표 진행)

기표된 투표지는 소정의 투표함에 넣고 투표 종료 직후 개표는 동일 장소에서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 하에 선관위에서 하게 되고 집계된 투표지는 최종적으로 위원장 및 각 측 참관인 대표자의 확인을 필 해야 한다. 집계된 투표지는 투표함과 함께 즉시 봉인되며 소정의 기간 동안 선관위에서 보관할 의무를 진다.

제 27 조 (당선 선포 및 공고)

소정의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피선된 정. 부회장은 위원장의 당선 선포와 동시 당선이 확정되며 별도의 당선 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세칙 제 16 조에 의해 공고된다,

제 28 조 (당선자 선서 및 이, 취임식)

회장으로 당선된 자는 당선 확정과 동시 총회에 출석할 전 회원 앞에서 한인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신, 구 회장단의 이, 취임식은 동시 또는 추후 별도의 기일 내에 할 수도 있다.

-----선 서-----

메릴랜드 한인회 제 00 대 회장으로 당선된 나 000 는 본 한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창립 취지와 존립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며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양심과 정의와 성실성에 입각하여 임기 동안 대외적으로는 회원의 지위 향상과 권익 옹호 및 국제 칙선 도모에 노력하며 대내적으로는 회원 상호간의 칙목과 단합과 상부상조 정신을 함양하여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길이 이 땅에 굳건할 뿌리를 내리게 함으로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은 물론, 조국과 민족을 사랑할 수

있고 훌륭한 미국 시민으로서의 표상이 되는 한민족의 찬란한 집합체가 될 수 있도록 본인의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전체 회원 여러분께 맹세합니다.

20XX 년 X 월 X 일

제 29 조 (투표함 보전 신청 및 재심 청구)

한인회 정회원으로서 선거 종료 후 입후보자의 당, 략에 관계되는 중대할 하나자 사유가 있다고 사료될 시는 재심, 재 개표 및 투표함 보전 신청 등 이에 관계되는 필요 사항을 당선 선포 일로부터 만 7 일 이내(공휴일 포함) 에 서면으로 선관위에 제출할 권리가 있다. 단, 제출 방법은 등기 우송에 할하며 재심 청구 서류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명확한 재심사 청구 사유 규명
- 2) 재심 당사자(정, 부회장 입후보자) 의 자필 서명
- 3) 정회원 50 위 이상의 연대 서명 ---추후 접수 가능
- 4) 법정 비용 포함 제반 재심 절차 비용을 청구자 측에서 부담한다는 공증 서류 -추후 접수 가능

제 30 조 (재심 절차)

전 항에 의해 선관위에 재심 청구 서류가 접수된 때에는 선관위 1 차 회의에서 재심 청구 서류 심사 및 추가 서류 보완 여부를 결정하여 즉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통보일로부터 만 10 일 이내(공휴일 포함) 에 최종 서류를 보완 등기 우송으로 선관위에 접수시켜야 한다. 모든 최종 결정은 법원 판결 및 명령을 원칙으로 하나 단, 선관위의 특별 의결로 최종 보완 서류 접수 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관계 당사자를 참석시킨 1 차 확대 회의에서 공개, 재심하여 판별할 수도 있다. 가, 부가 최종 판별 및 판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정정 공고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이유 여하를 불문코 재차 청구할 수 없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아니한다.

제 31 조 (투표함 및 기표지 처리)

당해 선거에 관계되는 투표함 및 기표지, 선거위 명부는 전 항의 재심 청구가 없는 할 투표 종료일로부터 만 14 일 이후에 위원장의 입회 하에 소각시킬 수 있다. 단, 재심 청구가 발생할 시는 재심 결과에 따라 판결 확정과 동시에 위원장 입회 하에 소각시킬 수 있다. 제 32 조 (등록 서류 보관 및 처리)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 일체 (등록 신청서, 이력서, 사진, 추천인 명부, 신분증 사본 및 학, 경력 증명서 사본 및 공탁금 수표 사본 등)는 선관위에서

영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선관위가 독립 재산제로서의 기능을 구비하기까지 한인회장 책임하에 한인회 사무처에서 인수 보관하는 의무를 진다. 단, 선거 공탁금은 당선자 확정 후 30 일 이내에 신임 한인회 재무부에 인계되어야 한다.

제 33 조 (미비사항)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할 미비 사항은 국가 및 사회 단체의 조례와 관행에 따른다.

제 34 조 (부칙)

- 1) 선관위에서 필요할 회의 소집은 당해 한인회장에게 소집 요청을 함으로써 회장은 지체 없이 시간, 장소 등을 결정하여 이를 선관위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보할 의무를 진다. (본 세칙 제 7 조 2 항 참조) 단, 선관위의 독립 재산제 이후는 별도로 한다.
- 2) 투, 개표의 시작과 종료 시각은 장내 사용 규정과 질서 유지 및 유권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선관위에서 신축성 있게 결정한다.
- 3) 입후보자 등록 서류의 간소화, 통일화를 고려하여 별첨의 서류 양식을 유첨해 두며 이는 본 세칙의 개정 규정에 관계없이 당시의 실정에 적합할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 4) 본 세칙은 총 34 조 및 부속 항, 별첨 서류 4 면으로 기초된다.
- 5) 선관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사임 시에는 이사회 소집을 생략하고 당해 한인회장 직권으로 결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 6) 선거 구역을 솔즈베리 지역을 포함할 메릴랜드 전 지역을 투표 지역으로 정한다.
- 7) 본 세칙의 기초, 제정, 심의, 채택 가결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관계인이 아래에 서명한다.

2019 년 10 월 31 일

제 36 대 선거 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